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전매체) 12. 5.(화) 국회회의 종료시점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

-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규정 신설, 소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 한다.)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21년 기준으로 55.1만개이며 종사자는 128.3만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악세사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기업체가 많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이왕재	(044-204-7880)
		담당자	서기관	김대수	(044-204-7280)
			사무관	이호준	(044-204-7883)
			주무관	오유진	(044-204-78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신 설>	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참고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개요

□ **(추진경과) [발의]** 이용선의원 대표발의('22. 9.29) →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22.11.21) → 소위 수정안 의결('23.2.13) → 전체회의 의결(5.16)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5.16) → **[본회의]** 법안가결(5.25) → 법안 공포(6.20)

□ **(개정 이유)**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

○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추진** 필요

○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제출,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 실시 등**

□ **(개정내용)** 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성과평가,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 신설

○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3년 조정**(제5조제1항 개정) 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견청취** (제5조제3항 신설)

○ **자구 수정*** 및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제6조제3항 신설)

* 제6조2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자구 수정

○ **소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추가 (제7조제1항, 제2항 개정)

참고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요

□ **개정배경**

○ 「도시형소공인법」 개정('23.6.20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

□ **(추진경과)** 입법예고(8.4~.9.14) → 부처협의(8.10~8.11) → 법제처심사*(10.27~11.23)

* 법제심사 현황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구조정 등 완료

□ **주요 개정내용**

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의견청취 예외 규정 신설 (경미한 사항 정의, 안 제4조제2항 신설))**

- 사업명칭 변경,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 계산 착오, 오기 등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②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안 제4조제3항과제4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장에게 자료요청, 종합계획 수립시 통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조항 (안 제5조제1항~제3항 개정·신설)**

- 사업개요, 실적 및 운영계획,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 **(향후일정)** 국무회의(12.5) → 공포(12.12) → 시행(12.21)

참고3 도시형소공인 정의 [소공인법 제2조에서 정의]

1 도시형소공인 정의 (소공인법 제2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소공인법 제2조제1호가목)

②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소공인법 제2조제1호나목)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공인법 제2조 1호가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붙임〕 참조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①항) ⑯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㉓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3 대통령령(소공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공인법 제2조 1호나목)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 (소공인법 시행령 제2조)

* 제조업 중분류 : C10~C34 (25개) ※〔붙임〕 참조

⇒ **(도시형소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의 중분류(C10~C34 ;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공인**

붙 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제8조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음영부분'업종(25개)이 소공인 해당 영위 업종임.

참고4 도시형 소공인 기업체 현황 ('21년 중소기업기본통계 기준)

◆ (도시형소공인) **55.1만개사(128.3만명)**, 20년(51.3만개사) 대비 3.8만개사↑
⇒ **전체 제조업의 88.8%**

◆ (집적지) **26.2만개사 ⇒ 전체 제조업의 47.5%**('21년 기준)

□ 도시형소공인* 현황 * 제조업(중분류 25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기준)

○ (총괄) 도시형소공인은 **55.1만개 기업체에 128.3만명이 종사, 전체 제조업 대비 기업체수로는 88.8%, 종사자수로는 26.1%**

구 분	도시형 소공인(25개 업종)		전체 제조업	※ 참고	
		제조업대비 비중		소상공인	전체 산업
기업체(개)	**551,049**	88.8%	620,252	7,335,397	7,723,867
종사자(명)	**1,283,380**	26.1%	4,904,948	10,461,890	22,865,491

* 자료 : 중기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1년 기준)

○ (업종) 금속가공(82,894개, 15.0%), 식료품(69,584개, 12.6%), 기타기계장비(65,892개, 12.0%), 기타제품(31,643개, 5.7%), 의복·액세서리(31,408개, 5.7%), 전기장비(31,328개, 5.7%) 등에 분포

○ (지역) 경기(17.1만개, 31.1%), 서울(8.0만개, 14.6%), 경남(4.6만개, 8.3%), 부산(3.6만개, 6.6%), 경북(3.6만개, 6.5%)등에 위치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현황 *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인 읍·면·동
(자료 : '21년 기업통계등록부 기준)

○ (총괄) 전국 23개 업종별로 2,463개 집적지가 산재

○ (업종) 식료품(534개, 21.7%), 금속가공(362개, 14.7%), 기타기계장비(322개, 13.1%), 전기장비(151개, 6.1%) 등에 분포

○ (지역) 경기(833개, 33.8%), 서울(312개, 12.7%), 경남(232개, 9.4%) 등에 위치

< 집적지 기준 및 현황 >

행정구역	기준	집적지	소공인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개 이상	757개	103,569개
시, 특별자치시.도 內 읍·면·동	40개 이상	1,207개	136,186개
군 內 읍·면	20개 이상	499개	22,060개
계		2,463개	222,781개